



제422회 국회 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‘홀로 사는 노인’에 대한
지원을 하는 기관단체’ 포함〉

■ 박희승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7089호)

2025. 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오 세 일

목 차

I . 개요	1
--------------	---

II . 검토의견	2
-----------------	---

I. 개요

1.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7089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박희승의원 등 17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12. 30.
- (3) 회 부 일 : 2024. 12. 31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·장애인·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.

2023년 「노인복지법」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.

이는 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,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·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,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).

II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내용

☐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관련기관에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·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).

[illegible]

현행	개정안
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장애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(생략) 2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. ~ 10. (생략) ② ~ ⑬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·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⑬ (현행과 같음)

2. 검토의견

□ 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에서는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’ 이라 함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,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¹⁾

□ 이는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이용이 잦은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근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,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.

-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,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기관,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임.

1)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장애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(이하 각 호 생략)

< 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 >

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제1항 각호

1.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,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
2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
3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4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
5.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
6.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(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,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)
7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
8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
9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
10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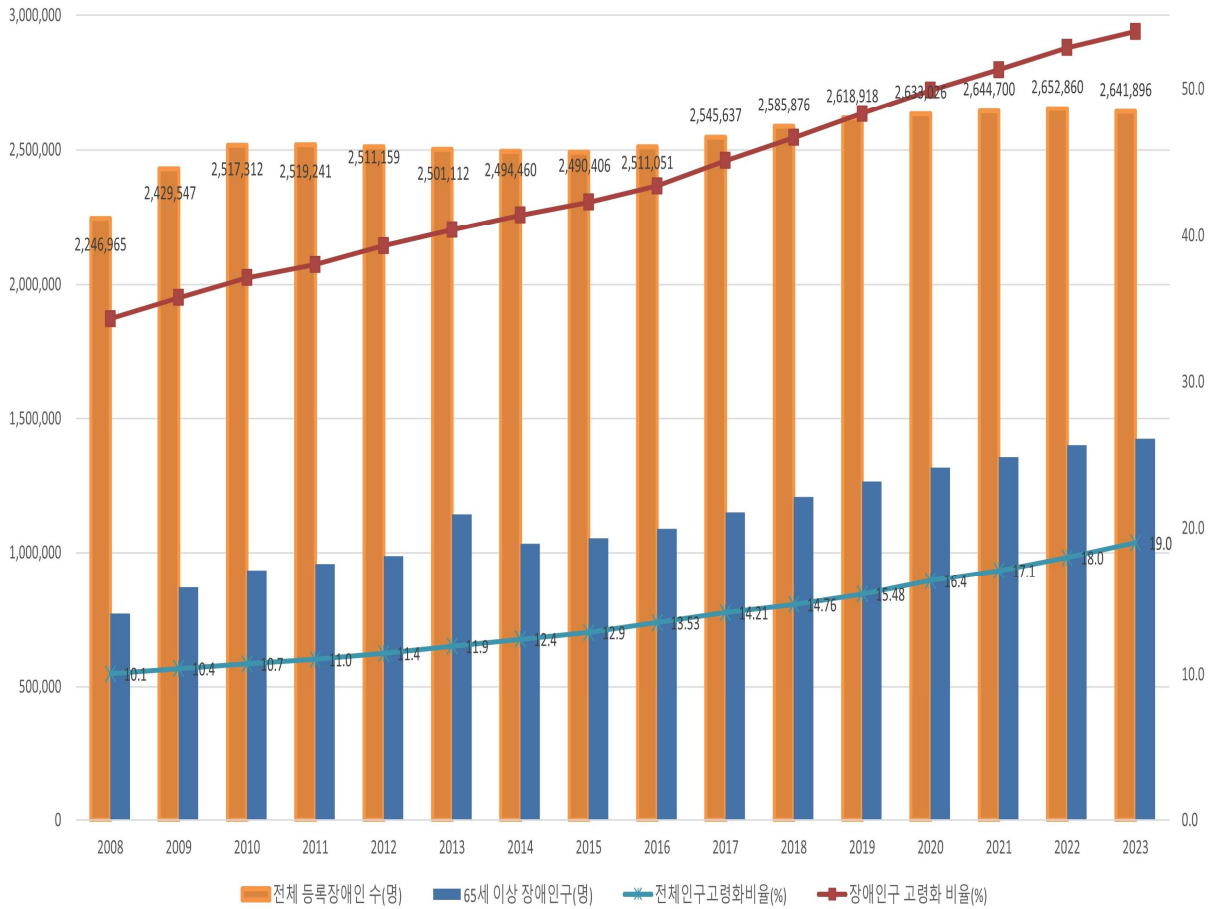
□ 2023년 말 기준, 전체 등록장애인(2,641,896명)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,425,095명(53.9%)이며, 장애인구 고령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,²⁾

「노인복지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·단체를 장애인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.

- 참고로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2025년 1월 기준,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기관 등은 전국에 670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,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전체 이용자는 53만 3,726명, 이중 장애인이용자는 10만 6,500명(약 20%)으로 파악되었음(참고자료 1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).

2) 장애인의 고령화 비율은 2021년 처음 50%를 돌파한 후, 2022년에는 52.8%, 2023년에는 53.9%로 조사되었음.

<전체 인구/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- 연도별>



자료: 한국장애인개발원. (2024). 2024 장애통계연보.

□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관련기관에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·단체³⁾를 명시하여, 선제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.

3)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□ 다만,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‘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’로 정하고 있는데,

①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관련기관에 ‘피해장애인 쉼터’와 ‘피해장애아동 쉼터’, ‘장애인평생교육시설’, ‘장애인 표준사업장’ 및 ‘이동지원센터’를 포함하도록 최근 개정된 「장애인복지법」⁴⁾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을 ‘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’로 정하고 있고,

②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3.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

가. 보건복지부

□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저지른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을 확대하여 사전에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함.

문 의 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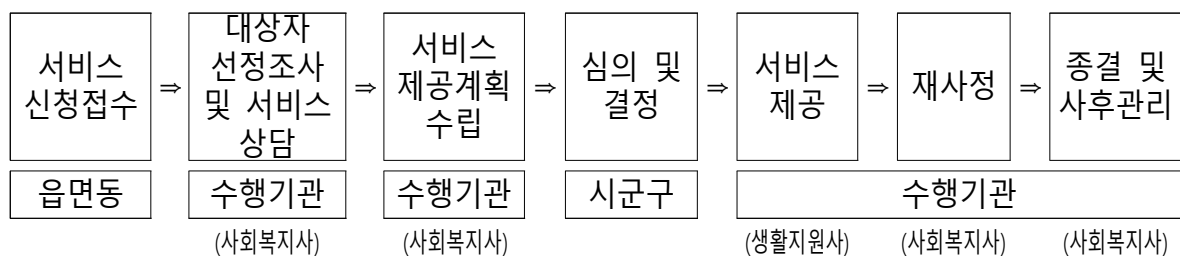
02)6788-5502

4) ([시행 2025. 4. 23.] [법률 제20510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

<참고자료 1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>

- (목적) 지역사회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
진입 지연·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
 - * '20년부터 기존 6개 돌봄사업을 통합하여 시행
- (대상) 65세 이상 기초생활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·조손가구 등
돌봄이 필요한 노인 ('25년 55만명)
 - * 대상자 선정도구: 신체·정신·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
선정여부,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
- (서비스 내용) 안전지원·사회참여·생활교육·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
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
 - * 개인별 돌봄욕구·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,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
다름
 - * 방문형, 통원형(그룹형 프로그램) 등 제공형태 다양화
- (서비스 제공체계) 시·군·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, 접근성 등을 고려, 권역을
설정하여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 선정·위탁(670개소)

< 서비스 제공 흐름도 >



○ (수행인력) 전담사회복지사·생활지원사 3.9만명 채용

- * (전담사회복지사) 서비스 상담,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·
관리, 자원 발굴·연계 등(일 8시간 근무, 월 급여 240만원, 0.2만명)
- * (생활지원사) 직접 서비스 제공(일 5시간 근무, 월 급여 130.8만원, 3.7만명)

□ (예산) '24년 5,461억원→'25년 5,394억원(보조율: 서울 30%, 지방 70%)

- *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비 증액, 서울시 보조율 인하(50%→30%) 반영

☐ (수행기관 자격)

○ (자격요건)

(1) 관내 시설*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'법인')

* '시설'의 종류 : 노인복지시설·사회복지관·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, 자활기업·자활사업단 등 시설,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

* 단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('19.12.12. 시행, '18.12.11. 개정(법률 제15881호)) 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'재가장기요양기관'은 참여 불가

(2) 사회서비스원

(3) 시·군·구 직영·시설

☐ 수행기관 선정

○ 수행기관은 지자체별 '공모'를 통해 선정

* 공모 절차는 지자체 자체규정에 따라 진행

☐ 위탁계약

○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최소 2년~최대 5년

*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, 위탁 기간 동안의 사업평가 등을 통해 재공모 절차 없이 재위탁 가능

* 위탁계약 절차는 지자체 자체규정에 따라 진행